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1. 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22. 장정희 의원 외 8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3. 3. 3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장정희 의원

가. 제안이유

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·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적용 범위 확대하여 제명 개정
- 2)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3)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조례안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활 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·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임.
- o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"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 시 마포구 중·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"로 제명을 개정하고,
 - 안 제1조 중 "장년층"을 "중·장년층"으로
 - 안 제2조 제1호 중 ""장년(長年)층"이란 50세"를 ""중·장년(中・長年) 층"이란 40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"장년층"을 각각 "중·장년층"으로
 - 안 제3조 중 "장년층"을 "중·장년층"으로
 - 안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장년층"을 각각 "중·장년층"으로
 - 안 제5조에 실태조사를 신설하고
 - 안 제9조(종전의 제8조)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"장년층"을 각각 "중·장년층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"를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"로, "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"를 "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"로 개정하는 것임.
-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구민의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 중·장년층의 실태조사와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중·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 타 : 없 음

착고자료

1. 관련법령

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법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노후설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, 건강, 여가,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2. 5. 23.]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18744호, 2022. 1. 11., 타법개정]

제6조(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.

- 1.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- 2.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
- 3.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한다)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. 다만,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.
-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